[별첨 4]

2022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

1. 편의지원 제공대상

- O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
 -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
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- O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2. 편의지원 신청 절차

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([참고1]의 장애유형 및 정도, 편의지원 내용, 증빙서류 확인)

원서접수 시 편의제공 신청 **원서접수 시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**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(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)

증빙서류 제출 (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) - 제2회 임용시험 : 2022. 2. 21.(월) ~ 2. 28.(월)

- 제3회 임용시험 : 2022. 3. 21.(월) ~ 3. 28.(월)

- 제4회 임용시험 : 2022. 7. 18.(월) ~ 7. 25.(월)

※ 기간 내 방문 또는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

수 서류제출 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인사과 고시교육담당(우51154)

※ 증빙서류는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여야 함 ([참고2] 발급일자 표 참조)

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

- ☆ 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
- ♠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

3.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

- **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**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, 제출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,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정도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[참고1]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[의사진단(소견)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]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, 「의료법」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 - ※ 해당지역의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**는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O 장애인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[참고1] 「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」 중 시험시간 연장 편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O 시험실시기관의 여건상 편의지원 내용 중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O 2021년 이후 경상남도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.
 - ※ 단, 제출했던 서류의 발급일이 해당 시험의 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하며 기한 경과 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.
- 기타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(☎ 055-211-3521)으로 문의바랍니다

참고1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	장	애유	구형 및 정도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 (각1부)	비고
지체 장애	상지	공 통		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• 별도시험실 배정	없음	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	·답안지 대필 ·시험시간 연장 1.5배	없음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없음	기존 4~6급
	하지		장애정도가 심한 자 / 심하지 않은 자	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 시험실 배정	없음	기존 1~6급
니뱀배	공 통			•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•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• 휠체어 전용 책상(휠체어 사용자) • 별도시험실 배정	없음	
뇌병변 장 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			·답안지 대필 ·시험시간 연장 1.5배	없음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				• 의사진단서	기존 4~6급
		장애	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•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없음	4°0 H
			공 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	
시 각 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		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시험시간 연장 1.7배 ·음성지원컴퓨터 ·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• 의사진단서	기존 1~2급 기존 3급 2 호
			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시람	•시험시간 연장 1.5배	없음	기존 3급 1,2호
			두 눈의 시아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시험시간 연장 1.7배 ·음성지원컴퓨터 ·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 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• 의사진단서	기존 4 급 2 호
	자해저	정도가 않은 자	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시람	·시험시간 연장 1.5배	없음 *	
	46 시 &		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시람	·시험시간 연장 1.5 배	없음 **	기존 4,5급 1호
			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사력이 0.3이하인 사람		• 의사진단서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
			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없음	기존 5급 2호, 6급
청 각 장 애	장애정 심경		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없음	기존 2~6급
	• 일시?	적 신치	중복장애 세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J는 자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• 의사진단서	
기 타			임신부	・높낮이조절책상 ・시험 중 화장실 사용 ・별도시험실 배정	의사소견서 또는 임신 사실확인서	
	과민]성 대장·방광증후군	·시험 중 화장실 사용 ·별도시험실 배정	• 의사진단서	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* 확대답안지 : A3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 1 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문제지를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

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.

※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※ 화장실 사용: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됩니다.

*, *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참고2 의사진단서 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

- 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 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 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.
 - ※ 다만, **임신부의 경우**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**의원급 의료기관** 및 **병원급 의료기관**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
- 2. 발급일자 :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7 8	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			
十 正	제2회	제3회	제4회	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22년 2월 25일	2022년 3월 25일	2022년 7월 22일	
진단서 발급일	2020년 2월 26일 이후	2020년 3월 26일 이후	2020년 7월 23일 이후	

- 3.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 -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*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, 시야각 명기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점지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-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: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

-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-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<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 >

	장애유형 및 정도	예 시 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 각 장 애	장애정도가 심한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시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시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 장 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중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시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미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	기 타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- 증상: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시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
※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내용이 포함 될 경우 반드시 (상급)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